최 신 판 례 예 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5081, 2021.0721

▌질 의

• '21.7월부터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미국달러선물을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예정임

질의내용

• EUREX 연계 야간시장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경우 국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상가건물의 분양 인도시기지연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질 의

• 신청법인은 '20.7월 **도 **시 **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가")을 수분양자들에게 '22.2월까지 분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21.1월 쟁점상가 신축부지에 지반붕괴가 발생하여 공사지연 및 그에 따른 입주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분양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가액의 2%를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 '21.3월 입주지연에 따른 인도조건 변경으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가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지체상금")을 추가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변경된 인도기일('22.12월 예정) 등이 반영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질의요지

•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도시기 지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 외에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서지체상금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우

-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 신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970, 2021.07.26

▌질 의

• 상증령 §54①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94①4(다)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급배수시설, 야간조명시설, 옥외전기시설 등)이 소득세법 94①1, 2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 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355, 2021.09.17

▌질 의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회 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용지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2, 2010.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852, 2010.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